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보고서

2024. 9.

법제사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7월 26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상정,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정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 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동 제도 도입 시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에 공탁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 기습공탁을 통한 부당한 양형 감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피해자 의견청취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등 공판절차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서를 제출하는 등 불수령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형사공탁이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판부가 피해자 의사의 존중 원칙하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 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 의

무적 의견청취 원칙하에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는 방안 등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승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수정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법원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피해자 등의 범위를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등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94조의5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294조의5제1항 단서 신설).

## 8. 심사결과

수정의결

##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피해자 등의 범위를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등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 (안 제294조의5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 (안 제294조의5제1항 단서 신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4조의5제1항 중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u>&lt;신설&gt;</u> |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u>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lt;단서 신설&gt;</u> |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br>-----<br>-----<br>-----<br>-----<br>----- <u>피</u><br><u>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u> -----<br>-----<br>--. <u>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 ② 제1항에 따른                                                                                                                                                                            | ② (개정안과 같                                                                                                                                                                                                                                         |

|  |                                                                                             |    |
|--|---------------------------------------------------------------------------------------------|----|
|  | <u>의견 청취의 방법</u><br><u>· 절차 및 그 밖에</u><br><u>필요한 사항은 대</u><br><u>법원규칙으로 정한</u><br><u>다.</u> | 음)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p> |